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578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이강일·한정애·김남근

강준현 • 이연희 • 박수현

김용만 • 노종면 • 박민규

민병덕 • 복기왕 • 채현일

윤종군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직퇴임변호사는 일정기간 동안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관예우나 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 이른바 "몰래 변론"과 같은 음성적 변호활동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방안으로 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객관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정의 명확화 등(안 제22조제1항, 안 제22조 제6항 신설)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사무직원에 대한지도·감독의 책임이 변호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나. 연고(緣故) 관계 선전금지 대상 확대(안 제30조)

변호사와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연고 관계를 선전해서는 아니 되는 공무원 등의 범위에 재판기관과수사기관에서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도 추가하고, 조사·감독·규제또는 제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의 공무원 및 소속 직원을 추가함.

- 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등(안 제31조제3항 및 제89 조의4제1항)
 -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 사 및 취업심사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을 퇴직

한 날부터 1년에서 각각 3년 및 2년으로 확대함.

- 2)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 사는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3년간 소속 지 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함.
- 라. 변호사와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규제 신설(안 제34조, 제35조)
- 마.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안 제89조의3제5항 신설)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 위반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 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두도록 함.
- 바. 변호사 징계기준 마련(안 제92조의3 신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두는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사.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대리하거나,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 등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등의 경우 처벌을 강화함(안 제112조의2).
- 아.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등의 업무 에 관하여 사전에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금품·향응을 요구

하는 경우 등에는 법무법인 등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안 제1 15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무직원"을 "사무직원(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 없이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단,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 자나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변호사는 사무직원(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0조 중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다음 각 목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가. 재판기관
 - 나. 수사기관
 - 다. 공정거래위원회
 - 라. 국세청
 - 마. 그 밖에 조사·감독·규제 또는 제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 나. 그 밖에 조사·감독·규제 또는 제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1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하였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을 위한 경우나 사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하였던 국가기관이 처리 하는 사건: 퇴직한 날부터 3년
-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 상자(제1호의 등록재산 공개대상자는 제외한다)였던 공직퇴임변호 사가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하였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 퇴 직한 날부터 2년

- 3. 그 밖의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하였던 국가기 관이 처리하는 사건: 퇴직한 날부터 1년
- ⑤ 제3항, 제89조의4 및 제89조의9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공직퇴임변호사로 보지 아니한다.
- 1. 재판연구원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
- 2. 사법연수생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
- 3.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근무한 군인·공익법무관 등의 직에 서 퇴직한 사람
- 4.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 기간 중에 국가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을 각각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을 각각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제35조 중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을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제89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를 "조직·운영과 제5항에 따른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의 설치·운영등에"로 한다.

⑤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커 등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둔다.

제89조의4제1항 중 "2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 3년
- 2. 그 밖의 공직퇴임변호사: 2년

제89조의6제1항 중 "매년"을 "퇴직공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동안 매년"으로 한다.

제9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3(징계기준 마련)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비위의 유형, 정 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 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두는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변협징계위원회"로 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 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 2.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자
 - 3.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113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5조를 제113조의2로 하고, 제113조의2(종전의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의2(벌칙)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나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양벌규정) 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이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09조제2호[제34조제2항 및 제3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변호사의 사무직원이 그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09조제2호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변호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변호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 2. 제89조의4제1항·제2항 또는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나 처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3. 제8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117조제2항제1호의2 중 "제29조"를 "제29조, 제30조"로,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을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제8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임제한기간 중에 국가기관에서 퇴직한 변호사의 수임제한 완화에 따른 적용례) 제31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4제1 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무법인 등의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제출의무기간 변경에 따

른 적용례) 제8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출의무기간은 이법 시행 전에 퇴직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업무내역서의 제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의 수임제한기간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혀 제22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 제22조(사무직원) ① ----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 사무직원(계약의 명 있다. 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법률 사무소에 소속되어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 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단,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나 변리사, 회 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변호사는 사무직원(제3항에 <신 설>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도 •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 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 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

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제31조(수임제한) ①・② (생 제31조(수임제한) ①・② (현행과 략)

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 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

1. 다음 각 목의 기관에 근무하 는 공무원

가. 재판기관

나. 수사기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라. 국세청

마. 그 밖에 조사·감독·규 제 또는 제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근무하 는 소속 직원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 융감독원

나. 그 밖에 조사·감독·규 제 또는 제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같음)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 |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 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 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 · 공익법무관 등으 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 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 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 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 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 | 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 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 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 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 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한 사람(이하 "공직퇴임변호사"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하였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국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처리하 는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을 위한 경우나 사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수임 할 수 있다.

-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 항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 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하였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 퇴직한 날부터 3년
-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 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 심사대상자(제1호의 등록재산 공개대상자는 제외한다)였던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3 년 동안 근무하였던 국가기관

④ (생략)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 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 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 <u>이 처리하는 사건: 퇴직한 날</u> 부터 2년
- 3. 그 밖의 공직퇴임변호사가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하였던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퇴직한 날부터 1년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3항, 제89조의4 및 제89조의 의9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사람은 공직퇴임변호사로 보지아니한다.
- 1. 재판연구원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
- 2. 사법연수생의 직에서 퇴직한사람
- 3.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근무한 군인·공익법무관 등 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
- 4.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로 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수 임제한기간 중에 국가기관에 서 퇴직한 사람

제34	13	(변	ट्रे	사.	가	아	닌	자.	와으	동
어] -	금ス		등)	1)			. — —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 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용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 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 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 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1
변호사
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
를 포함한다)
2
변호사나 그 사무
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
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다)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
는 자를 포함한다)은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에 있
는 자를 포함한다)은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⑤ (생략)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 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 원 · 수사기관 · 교정기관 및 병 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 운영 및 예산)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윤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
	-
<u>.</u>	

④·⑤ (현행과 같음)

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고용인(사실상 고용관계 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ㆍ 운영 및 예산)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 커 등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 위반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 신고센터를 둔다.

<u>⑥</u>----- <u>조직·운영과</u> 제5항에 따른 법조비리 감시 • 신고센터의 설치 · 운영 등에 -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제출) ① 공직퇴임 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수임한 사건에 관한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 략)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 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 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하 이 조에 서 "퇴직공직자"라 한다)가 법 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 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 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
임 자료 등 제출) ①
<u>다음 각</u>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u>.</u>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
항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
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 3년
2. 그 밖의 공직퇴임변호사: 2
<u>년</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
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등"이라 한다)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 ⑥ (생략)

----- <u>퇴직공직자의 퇴직일부터</u> 3년 동안 매년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2조의3(징계기준 마련)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비위의유형,정도,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 항에 따라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대한변 호사협회에 두는 변호사징계위 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 계위원회의 구성) ① 변협징계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 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

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 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 4.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설>

위원회-----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 (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 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 호하거나 대리한 자 2.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자 3.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 의16 또는 제58조의30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13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 략)
-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 (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 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 5.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u>또는 제58조의30</u>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 한 변호사
- 6. (생략)
-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 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① | 제113조의2(벌칙) 법무법인·법무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6. (현행과 같음) <삭 제>

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 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 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 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게도 같은 항의 벌 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무 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 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 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15조(양벌규정) ①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의 구성원,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이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 09조제2호[제34조제2항 및 제3 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 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로 한

정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변호사의 사무직원이 그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09조 제2호(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변호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변호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제117조(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 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 13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 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 무조합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 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 2. 제89조의4제1항·제2항 또는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나 처리 결과를 거 짓으로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1의2. 제22조제2항제1호, 제28 조의2, <u>제29조</u>,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u>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u> <u>되는</u>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 반한 자

2. ~ 8. (생 략) <u><신 설></u>

③・④ (생 략)

<u>3. 제89소의6제1항을 위반하여</u>
업무내역서를 거짓으로 제출
<u>한 자</u>
②
<u>.</u>
1. (현행과 같음)
1의2
<u>제29조, 제30조</u>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2. ~ 8. (현행과 같음)
9. 제8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
<u>한 자</u>
③ • ④ (형해과 간으)